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3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선교 · 김태규
고동진 · 김미애 · 곽규택
김용태 · 윤한홍 · 박충권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기품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3조의2(위기품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0조(벌칙) (생략) <u><신 설></u>	제50조(벌칙)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